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4. 13 선고 2021가단1071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07. 1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. 1. 22. 접수 제3405호로 마쳐진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전경훈

별지